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07 발의연월일: 2024. 12. 4.

발 의 자:이언주・박홍배・이재관

이광희 • 오세희 • 정진욱

김동아 • 이개호 • 민병덕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 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차로 신호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	②
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	
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	
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교차로에 신호기를</u>
	설치하는 때에는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
	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